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국립·공립의 대안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함(안 제30조의2제1항).
- 대안학교가 소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나 학교운영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0조의3).

II. 검토의견

1. 대안학교 정보시스템 이용시 자료제공 제한 적용(안 제60조의3)

현행법 제60조의3제1항¹⁾에서는 대안학교에 대하여 다른 초·중등학교에 적용되는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교장·교감의 자격(제21조제1항), 교육과정(제23조제2항 및 제3항), 수업(제24조), 학교생활기록(제25조), 학년제(제26조), 교과용 도서(제29조),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제30조의4),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제30조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5), 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제30조의6),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제30조의7)임.

현행법에서 대안학교에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을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제30조의6)’²⁾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대안학교에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의무적으로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을 처리하도록 하는 제30조의5³⁾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2가지 기록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30조의6도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보임.⁴⁾

그러나 기존에도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라 건강검사기록의 작성·관리 의무 학교⁵⁾에 대안학교가 포함되어 있어서, 인적사항,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등 동조 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30조의5와 같이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⁶⁾ 개정안에 따르면

-
- 2)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①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자료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받은 자에게 사용목적, 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그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받은 자는 자료를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5(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소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그 밖에 소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4) 참고로 대안학교에 대하여 제25조(학교생활기록)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학교생활기록은 해당되지 않음.
- 5) 「학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 6) 「학교보건법」 제7조의3(건강검사기록)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라 건강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장

이 법에서도 대안학교의 정보시스템 이용을 규정하게 되므로 학생 관련 자료의 제3자 제공을 제한하는 제30조의6이 대안학교에 적용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대안학교에 대하여 제30조의6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도록 현행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현행과 같음)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제30조의4, 제30조의5, 제30조의7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 결과를 작성·관리할 때에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인적사항
2.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3. 그 밖에 교육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진출하거나 고등학교까지의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그 학교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넘겨 주어야 한다.

<u><신 설></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는 소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또는 학교운영비를 지원받는 대안학교가 학교회계 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u><신 설></u>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및 여건에 맞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대안학교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개정안과 같음)
② · ③ (생략)	④ · 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 ⑤ (개정안과 같음)

(전문위원 이 은 정)